

<b>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</b>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<b>신청서</b>			처리기간 7 일
신청인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한국도심공항(주) 박 천 일	② 법인등록번호 110111-6277655
	③ 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 (전화번호: 02-551-0755)	
④ 사업의 종류		시내버스 한정면허 (운행형태 : 공항버스)	
⑤ 변경사항		변경 전	변경 후
		붙임 참조	
⑥ 변경사유		· 공항이용객 수요대응 및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증차 - 6100번(망우역~인천공항) 2대 추가운행 - 6102번(수유역~인천공항) 1대 추가운행 - 6103번(도심공항~인천공항) 1대 추가운행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가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 를(을) 신청합니다.			
2023년 1월 2일			
신청인 한국도심공항(주) (서명 또는 인) 대표이사 사장 박 천 일			
국도교통부장관 시 · 도지사		귀하	
※ 첨부서류 1. 신·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.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, 영업소 및 정류소, 휴게실 및 대기실, 교육훈련시설, 그 밖의 운송 부대 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		수수료 증차: 기본 5,000원 자동차 1대당: 2,000원 추가 운행시간: 1,400원 기타: 2,000원	